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11월 15일 02시 42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시설 퇴소	3

시설 퇴소

2014.04.17 조회수 1225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3
담당부서	노인장애인과
상위법령	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
조례	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
유형	2호 - 명령(시정 등)
등록사유	사회복지
법령공표일	완화규제
존속기한	2013-08-14
규제시행/폐지일	2014-03-19
규제내용	제8조(퇴소)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. 1.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. 전염병 또는 기타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.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09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14

Yeosu Web Contents

